

-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에 따른 -
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

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,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)에 대하여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월 3일

서울특별시

1. 적용기간 : 2022년 1월 3일(월) 0시 ~ 2022년 1월 16일(일) 24시
※ (경과규정)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. 1. 17.(월) 05시까지 적용
2. 적용대상
 -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
※ 유흥시설 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·무신고 업소 포함(일반음식점 등도 적용)
 - 서울시 소재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3. 적용내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 조치
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조치 위반한 자 고발 조치(벌금 300만원 이하)
 -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방역수칙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
 -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(구상권) 청구

1) 붙임1 시설별 방역수칙 참조

5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3조

-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

- (제1항)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.

※ **마스크 착용**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」에 따름

※ **집합·모임·행사** 등의 경우 서울특별시 「**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**」 공고에 따름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2년 1월 3일(월) 0시부터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붙임 시설별 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	시설별 방역수칙	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

□ 유흥시설 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증명 확인 등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※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출입(이용) 가능/18세 이하 이용 금지 ◦ 접종완료자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접종완료 확인 등 협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**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 ** 수기명부 운영 금지 	
	④ 마스크 착용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음식물 섭취 시 예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⑤ 운영시간 제한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1시 ~익일 05시 운영 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운영시간 제한 준수 	
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(권고) 	-	
⑦ 추가적용 수칙(콜라텍·무도장 한정)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 내 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준수 	
권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손씻기) 공용물품 등 만진 후 손씻기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권고사항 준수

□ 식당·카페(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<p>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</p> <p>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</p> <p>***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</p> <p>※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(1개월)</p> <p>※ 위 1), 2)와 같은 '접종완료자' 등이 아닌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불가)</p>	
	③ 출입자 명부 관리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*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원칙** - 출입명부(수기)는 4주 보관 후 폐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 ※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
	<p>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같음</p> <p>** 단, 개인 휴대전화기 없는 경우,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작성 가능(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)</p> <p>※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(이용)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</p> <p>※ 계도기간(2021.12.6.~12.19.) 이후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</p>	
	④ 마스크 착용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<p>* 음식물 섭취 시 예외</p>		
⑤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방역관리자 지정 ◦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 	-	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⑥ 추가적용 수칙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(편의점* 포함)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 (편의점* 포함) ↳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·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
	*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, 자유업 포함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◦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◦ 테이블 간 이동 금지
권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◦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◦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 ◦ (공용집게 사용 등) 공용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◦ (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) 주사위, 카드, 게임기계,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,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◦ 권고사항 준수</div>	

<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>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흡연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사람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▲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▲ 대화 금지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▲ 흡연실 내 대화 금지
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▲ 사용 전/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▲ 사용 전/후 손씻기
탈의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▲ 손소독제 배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탈의실 내 대화 금지 ▲ 공용물품 만진 후, 손씻기 또는 손소독(권고)
샤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▲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▲ 공용물품* 배치 자제 *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샤워실 내 대화 금지 ▲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▲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▲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
휴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▲ 대화 자제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▲ 대화 자제
탕비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
민원창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▲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▲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